



#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言約徒) 운동사

— 우리 시대의 신앙을 조명해 보는 감동적 발자취 —

## 1. 언약도들의 신학 사상<sup>1)</sup>

그리스도의 수장(首長)권(Headship of Christ), 예배의 자유, 즉 흥적인 기도 및 교회 정치 제도 등과 관련된 언약도들의 주장은 그들의 분명한 신학 사상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1638년의 국가 언약(The National Covenant)에 서명토록 한 신학적 배경 및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옥외 집회에서 설교하면 재산을 몰수당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잊게 될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자녀들 조차도 금고형을 선고받고, 과중한 벌금과 감옥살이를 시키는 야만적인 칙령들이 발표되었을지라도 분연히 일어서서 죽기까지 항거하게 한 힘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언약도들로 하여금 온갖 핍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토록 굳건히 서게 하였는가? 그 힘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과 신학 사상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한다.

언약도들이 굳게 붙든 신학 사상은 한마디로 칼빈주의 신학이었다. 이것이 언약도들의 신앙을 지탱해 준 뿌리였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적인 삶을 지배한 신학 사상은 칼빈주의였던 것이다. 19세기의 성경적 지질학자요 역사가인 도우슨 경(Sir W. J. Dawson)은 말하기를 “언약도들을 탄생케 한 것은 바로 요한 칼빈의 엄격하고도 놀라운 체계적인 신학 사상이었다…… 칼빈의 신학으로부터 언약도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한 경이로 움과 의와 자유를 위한 열정, 인간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었다. 거기에다가 당대의 윤리 도덕을 단호히 다져 가는 일을 위하여 번쩍이는 하나님의 검처럼 사용된 언약도들의 신앙의 굳건함과 확신은 칼빈의 신학 사상으로부터

1. 언약도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개혁신앙」 90년 여름호(통권 제7호)에 실린 언약도 운동사를 참조 바라며 본 논고는 그 후편으로 언약도들(Covenanters)의 신학 사상을 다룬 것이다. 언약도들은 장로교도들로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동시대 인물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참된 장로교 청교도들이다.

배웠던 것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물론 국가 언약은 스코틀랜드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특별히 명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sup>3)</sup> 언약도들은 그들의 국가적 동질감을 칼빈의 신학 사상에서 찾았다. 이것은 1560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 아래 줄곧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개혁신학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특별히 ‘언약도 운동(Covenanting Movement)’이라는 말 자체가 17세기 스코틀랜드 사람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준다. 그것은 곧 칼빈의 가르침의 한 부분인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이다. 언약신학 안에서 언약도들이 탄생하였고 그 안에서 그들의 종교적 생활의 진수를 표명하였다. 1638년의 국가 언약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로부터 나온 작품이다. 더욱이 언약신학은 성령에 그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은 16세기 불란서의 부대우스(Budaeus, 1467~1540)나, 스코틀랜드에도 잘 알려졌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 문답서를 작성한 사람 중의 하나인 우르시누스(Ursinus, 1534~1583),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고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행위 언약(Foedus Oper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로버트 롤로크(Robert Rollock, 1555~1598)와 같은 인물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그러나 언약신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한 사람은 「계약과 언약 설명에 대한 교리 (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Explicata)」(1648)를 쓴 코케이우스(Cocceius, 1603~69)였다. 그는 아메시우스(Amesius)의 제자였다. 따라서 그를 언약신학의 주창자로 부른다. 사실 이 신학은 원래 유아세례를 부정한 재세례파들과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 종교 개혁자들의 입을 통해서 발전된 것이었다. 개혁자들은 유아세례를 그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 2. 언약신학이란?

언약신학이란 ‘언약(Covenant, בְּרִית )’이라는 개념에 중심 사상을 둔 신학이다. ‘언약’이라는 용어는 결혼 예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쪽이 동등한 가운데서 맺게 되는 쌍무 계약(bilateral Covenants)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다. 오히려 한쪽에서 주도하는 편무적 언약(Unilateral Covenants diatheke)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언약의 형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문구에서 찾아진다. 이 언약의 개념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유히 흘러내리고 있는 성령의 중심 사상이다(이 방면에서 성경신학

2. Quoted by J. C. Johnston in *Alexander Peden*, Mourne Missionary Trust, 1984. p. 4.

3. David Stevenson, *The Covenanters*, Saltire Pamphlets Series 11, 1988, p. 41.



적인 조명을 더 원하는 독자들은 O. P. Robertson이 쓴 *The Christ of the Covenants* –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 김의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 를 참조).

언약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개념을 묘사한다. 이 언약신학이 19세기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 핵심 열쇠였다.

언약신학(혹은 ‘Federal Theology’라고도 함)은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다. 이 사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 고등 칼빈주의(hyper-Calvinism) 와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신학 사상과 맞서서 일어난 신학이었다. 역사학자인 데이빗 스티븐슨(David Stevenson)은 말하기를 “언약신학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확실히 항거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입증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언약도 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사상적인 동맹을 준비하여 주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모든 신분과 계급을 총망라하여 연합시켰다…… 그들의 종교적인 이상은 언약신학이야말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게 했다.”<sup>4)</sup>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언약신학은 17세기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사회 정치적 사상에 아주 잘 들어맞았던 것이다. 봉건주의의 몰락, 그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계약이나 협약 및 언약 등을 맺어서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였고, 군주와 비교하여 백성들의 권리를 보존하였으며, 백성들과 비교하여 군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언약신학은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계약을 맺으며 또 국가 전체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하에 두려고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크게 수용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언약도 운동사는 신학적인 중요성(언약신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중요한 국면도(정치신학) 지니고 있다.<sup>5)</sup>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견해들은 평민들로 하여금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된 국가 언약(The National Covenant)을 굳게 부여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정치신학적 입장은 표명한 언약도들의 교회와 국가관은 이 논문 뒤에 따로 떼어서 기술하려고 한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언약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은 당시의 스코틀랜드를 이끈 두 명의 지도급 목회자인 제임스 더람(James Durham)과 데이빗 딕슨(David Dickson)의 공저인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에 관하여 (The Sum of Saving Knowledge)」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1650

4. David Stevenson, *The Scottish Revolution 1833-44*, David & Charles 1973, p.318.

5. J. B. Torrance, “Covenant or Contract” 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23, 1970, p. 53.

년에 출판되었는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과 함께 대중들에 의하여 크게 호응을 받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언약신학을 특별히 취급하였다. 특히 7장 2항과 3항을 보면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라는 제목 하에서 언약신학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과 맺어진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주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우는 둘째 언약을 맺으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 없이 제공하셔서 그들이 구원얻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이같은 언약신학은 언약도들이 굳게 부여잡은 사상이었다. 19세기의 역사학자인 제임스 월커(James Walker)는 말하기를 “스코틀랜드의 옛 신학은 한마디로 언약신학이었다고 일관되어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6)</sup> 언약도들은 이처럼 언약신학이라는 사상 위에서 행동을 함께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믿었다. 다음과 같은 국가 언약 문서에 보면 언약을 맺은 동지들로서의 언약도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의 지도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 식구들 및 사적으로 고용된 자들 모두를 위하여 크리스챤의 자유의 가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지킬 것이며, 모든 경건과 근신 및 의로움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범이 될 것을 신실히 서약하노라. 이같은 우리의 연합과 단결은 어떠한 침해도 없이 준수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 아래에 놓여 있으며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상실하고 치욕을 당하게 될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답해야 할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굽히지 않는 결단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심을 선언하노라. 참으로 겸손히 주님께 간구함은 이 목적을 위하여

6. J. Walker, *The Theology and Theologians of Scotland*, T & T Clark, Edinburgh, 1888, p. 73.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의 소원과 진행되는 일들 위에 복을 주사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 안에 참된 종교와 의로움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왕의 존귀를 드러내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노라.

이 문구는 하나님의 뜻을 죽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언약도들의 의지와 또한 그들의 국가 교회에 대한 경건한 개혁을 이루하려는 언약도들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언약도들은 이 문서에다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은혜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도들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가로 덧붙였던 것이다.

### 3. 그리스도의 수장(首長)권(The Headship of Christ)

언약도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신학 사상은 교회와 국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수장권이다. 스튜어트 왕가의 절대군주주의의 급격한 신장을 직면하게 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스코틀랜드에서 언약도들의 출현은 당연한 결과였다. 라우드 예식서를 수용해야 하며 모든 교구 교회(Parish Church)는 두 권의 예식서를 비치해야만 한다는 차알스 1세의 칙령은 스코틀랜드를 격분시킨 것이다. 라우드 예식서(Laudi Book of Canons)는 왕권우월주의를 명백히 못박았을 뿐 아니라 이 예식서의 목적 자체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멸절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 예식서를 용납할 수 없으며 또 감독주의를 배격하는 장로교도들을 출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 차알스는 스코틀랜드에선 누구든지 감독주의 신봉자가 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관직도 수여받을 수 없다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국가 언약에 서명한 언약도들은 맹세하며 선언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을 힘입어 앞에서 주장한 종교(장로교)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며 순응할 것이고 장로교를 수호하며 우리의 소명에 따라 이에 반대되는 모든 오류와 타락을 배격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신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이 신앙을 지킬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앙 문제로 인하여 당한 박해 기간 동안에 언약도들이 굳게 붙든 사상이요 믿음이었다. 왕의 야비한 칙령에도 불구하고 언약도들은 왕을 권좌에서 하야시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왕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

7. Acts of the Parliaments of Scotland, VII, 455, C. 9. (1663)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리 왕의 존귀와 권위를 축소시키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모든 수단과 생명을 통하여 우리 왕의 권좌를 수호하며 그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약속하고 맹세한다.

그러나 언약도들은 왕이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할 때는 분연히 반기를 들고 나섰던 것이다. 이처럼 왕에 대한 언약도들의 태도는 제임스 6세 당시의 안드류 멜빌이 왕권 신수설에 대항하여 교회의 신적 권리를 내세운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멜빌을 따르는 자들과 같이 언약도들도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수장권을 굳게 붙들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머리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다. 교황도 군주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군주가 신자일지라도 그는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의 행동을 뛰어넘어 교회 공의회까지 주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언약도들에 있어서 시민법들은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것이라야만 했다. 이러한 사상은 언약도들의 주된 지도자였던 알렉산더 핸더슨 (Alexander Henderson) 목사의 설교에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의하여 무슨 일을 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 위에 부어 주신 위엄과 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군주에 대하여 불순종한다거나 권세 잡은 자들을 공격한다고 큰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만일 위정자들이 어떤 것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강요할 때 그것에 순응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 위에 군림 할 유일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정자들에 대한 언약도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는 메시지였다.<sup>8)</sup> 이 개념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스튜어트 왕의 이론을 반박한 언약도들의 성자인 사무엘 루터포오드(Samuel Rutherford, 1600~1661) 목사에 의하여 더욱 진전되어 나타났다. 루터포오드 목사의 논리는 제임스 6세의 가정 교사였던 조지 버카난(George Buchanan)의 정부 이론으로부터 산출된 것이었다. 즉 왕은 선출되어야 하며, 국민에 의하여 계속 권좌에 앉을 수 있

8. J. D. Douglas, *Light in the North*, The Paternoster Press, 1964 , pp. 39, 40.

고, 왕도 나라 법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벼카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백성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왕을 보기 원한다. 폭력으로 지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왕을 원한다. 그것만이 왕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전신갑주가 될 수 있다.<sup>9)</sup>

언약도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왕의 존엄성 및 자신들의 공동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고 애쓴 자들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위정자들에게 불순종할 때가 있고 그것은 단지 신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라고 여겼다. 더구나 왕의 주장들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칠 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더 순종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었다. 즉 이 모든 것들 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내세웠다. 이러한 믿음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투쟁들 전반에 걸쳐 깔려 있는 신앙이었다. 제임스 월커는 다시 이야기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식주의나 성직자 주의가 없는 교회의 실체를 보여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것으로서 내가 확신하는 바, 교회의 큰 논쟁들 속에서 그러한 신학 사상을 굳게 불들게 해 준 것이다.<sup>10)</sup>

지상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의 영적 독립성은 언약도들의 독특한 증언이었다. 언약도들은 대중들의 권리들을 크게 신장시켰고 교육과 예배에 있어서도 교회의 독립성을 유지케 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들은 장로교 제도야말로 민주적인 조직체로 보았고, 국가의 종교적 삶이 흐르는 채널로 간주하였다. 교회 문제는 교회 자체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회의 본래적인 독립성을 언약도들이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국가관과 교회관을 통해서 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 4. 언약도의 교회와 국가 관계 (Covenanter's View of the tru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언약도들의 사상을 잘 대변해 준 위대한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9. *Ibid.*, p. 16.

10. James Walker, *op. cit.*, p. 129.

이다. 비록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한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신조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언약도들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하여 17세기 언약도들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1) 17세기에 현존한 이론들

17세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교황권 지상주의(ultramontanism)로서 이 이론은 중세를 거치면서 천주교의 지속적인 주장이었다. 즉, 국가는 세속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 특히 교황권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 만능주의(Erastianism)이다. 이것은 교황권의 횡포를 거절한 헨리 8세가 교회의 수장(首長)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다고 교황도 아닌 왕 자신이라는 선언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만능주의는 왕권 신수설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이 주장은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은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권위의 근원이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 및 종교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재판권이었다. 물론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신조인 39개 조항에서 ‘Quantum per Christi legem licet’ 즉 “어떻게 왕권이 그리스도의 통치 위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왕의 행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왕은 예배 형태도 바꾸고 신앙에 관한 새로운 조항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감독들을 해직하기도 하였고 새로이 임명하여 왕의 이름으로 직무에 충실하도록 강요하였다. 왕은 의회의 법령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법적, 영적인 문제들을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하였다. 지금도 잉글랜드의 성공회는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왕이 감독들을 임명하고 법적으로 감독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심지어 한 감독의 이단성 여부를 가리는 궁극적인 결정도 왕이 이러한 종교 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이처럼 국가 만능주의는 전국민의 돌봄을 왕에게 위임하였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말씀의 사역 문제까지도 왕의 손에 맡긴 것이다.

셋째로 임의 기부 제도(Voluntaryism)이다. 이 이론은 교회와 국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동맹 관계 또는 계약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배격하고 자원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위해 협력하는 제도를 말한다.

넷째로 언약도들의 견해로서 국교 제도 원리(Establishment Principle)이다.

### (2) 국교 제도 원리

국교 제도 원리는 교황권 지상주의도 아니고 국가 만능주의도 아니다. 더욱

이 임의 기부 제도하고도 전혀 다른 것이다. 언약도들이 취한 이 원리는 교회와 국가가 엄격히 구분(분리가 아님)되며 기능 역시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590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의, 두 왕과 두 왕국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영적 통치권은 양심을 존중하며 시민 통치권은 외적인 결과를 중시한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나 후자는 시민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전자는 영적인 말씀에 의하여 설복하며 후자는 무력으로 강요한다. 전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목적하며 후자는 정의를 내세워 국민의 생활을 돌보며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획득한다.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이다.<sup>11)</sup> 여기서 멜빌은 두 통치권의 영역과 기능을 분명히 규정하였고 또 두 기관의 상호 관계 및 의무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Samuel Rutherford 목사는 그의 유명한 책 *Lex Rex*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시민법과 정부의 저자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의 교회와 백성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모든 위정자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한 양부(Nurse Farhers)가 되어야 한다(사 49:23)<sup>12)</sup>

루터포오드의 이같은 사상은 많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안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위정자의 첫째 의무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참된 종교를 인정하며, 지지하고, 보호하며, 권장하고 지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군주의 첫째되는 의무요 동시에 통치자의 모든 책임감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루터포오드 목사는 교회 역시 국가를 향한 그같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회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영적,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언해야 한다. 또 국가 시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충돌이 될 때 위정자들을 훈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국가의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상을 피력하였다. 루터포오드의 그같은 사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반영되었다.

**20장 4항 :**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자유는 서로 파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붙들어 주며 보호해야 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영적)를 구실로 삼아 합법적인 권세나 또 그것의 합법적인 실행(즉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지)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도를 반대

11. *Ibid.*, pp. 143–144.

12. Samuel Rutherford, *Lex Rex*, Reprinted by Robert Ogle and Oliver & Boyd, Edinburgh, 1846. p. 105.

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선전이나 운동 같은 것은 자연 계시에도 위배되고 이미 알려진 기독교의 신앙, 예배, 행위의 원리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된다. 다시 말하면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문책되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과 국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 23장 :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1. 전세계의 대주재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을 위에 각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관하에서 봉사케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함이다. 하나님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무장시켰다.

2. 기독신자들이 각기 나라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에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들의 할 일은 이러하니, 1) 각기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참 종교와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2)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 합법적이다.

3. 위정자는 정규 예배시의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함과 천국의 열쇠(교회 치리권)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 봉사의 성격은 1)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2)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3)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이 억압되고 모든 부패와 예배 방해가 저지되고 또 개혁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4)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적절히 행해지며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5) 위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는 또한 그 회의에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4.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들이나 정부를 위하여 마땅히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 그들의 인격을 존중함, 정부에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함,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되 양심적으로 할 것 등이다. 2)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은 위정자의 법적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무 수행에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3) 교황은 세속적 사항들에 있어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그 백성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들에게 이단, 혹은 기타 과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도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박윤선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음사 1989).

20세기의 역사학자로서 17세기 역사의 대가인 G. D. Henderson은 그의 책 「스코틀랜드 교회의 요구 (The Claims of the Church of Scotland)」에서 한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국가와 교회 사이의 참된 관계가 무엇이냐?”고 진지하게 묻는 엄마에게 아이는 즉시 대답하기를 “Coordinate Jurisdiction with Mutual Subordination”이라고 하였다.<sup>13)</sup> 즉, 상호 종속되어 있는 동등한 통치 기관의 관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국교 제도 원리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대답은 국가와 교회 관계는 뚜렷이 구분된 두 통치 기관이라 할지라도 두 기관이 상호 협동적인 관계로서의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 19세기의 역사 신학자인 윌리암 커닝엄(William Cunningham)이 지적한 것처럼 “종교를 촉진시키는 것이 세속 정부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직무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종교를 장려(promotion)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다”<sup>14)</sup> 물론 이것은 위정자가 교회의 영적 문제에 있어서 간섭할 권한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위정자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참된 종교를 장려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영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교회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 책임이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그들의 조언자가 되어야 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 국가는 영적인 문제에는(in sacris) 권한이 없으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는(circa sacra)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속적인 것에는 통치권이 없다(in civilibus). 그러나 오직 세속적인 것에 관하여는(in civilia) 책임을 진다. 신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는 시민법 집행관으로서 가해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피해를 준 입장을 취급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비록 범법자가 종교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법 집행자는 가해자를 한 종교인으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법을 어긴 자로 취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자가 도둑질을 하여 시민법을 어겼을 경우 교회는 그를 세상법을 어긴 자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위배한 자로 다스려야 한다. 이처럼 교회와 국가는 서로 협력적이며 분리가 아닌 구분된 두 개의 통치 기관인 것이다.

## 5. 맷음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비난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하겠지만

- 
- 13. G. D. Henderson, *The Claims of the Church of Scotland*, Hodder & Stoughton, London, 1951. p. 154.
  - 14. W. Cunningham, *Discussions on Church Principles*, T & T Clark, Edinburgh, 1863, p. 1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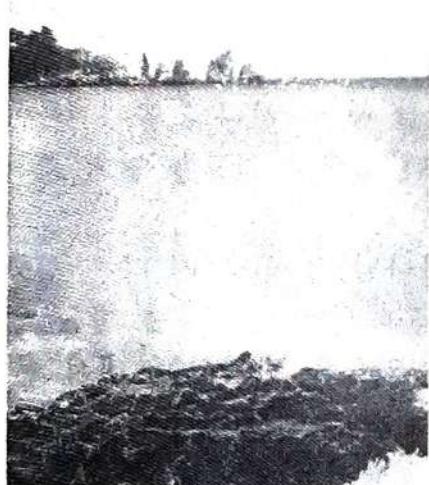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며 본 논고를 맷으려고 한다. 언약도들은 감독주의, 국가만능주의, 면죄부 등을 반대하여 시민들의 권리나 정치적 자유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선 자들이다. 감독주의는 늘 전제 정권과 밀착되어 연합하였다. 감독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왕의 피조물들(King's Creatures)”로 말했다. 그들의 권력은 전적으로 왕에게서 부여받은 것들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왕을 지지하였고 왕의 뜻에 늘 감사하였다. 왕의 뜻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자유와 안녕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러나 언약도들은 위정자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했으며 또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책임 이행에도 성실히 준행한 자들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성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위정자의 책임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그 원리가 바른 것이라고 믿는 언약도들의 국가 제도 원리였다. 또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표명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기관이 아니라 서로 구분되는 동등한 두 개의 통치 기관으로 상호 협력적인 것이다. 언약도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성령적이기를 추구하였고 그들의 이론을 실제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킨 자들이었다. 신학이 있는 신앙관을 굽히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었다. 개혁주의 신학이 상실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언약도들의 정신이 개혁주의 장로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활력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 논고를 끝맺고자 한다.

\*표지 그림 감상

### 바다의 소원

최석진  
(개혁주의신행협회 사무국장)

엄마 품 떠나 오염된 물들  
흘러흘러 다시 엄마 품 바다로.



되돌아온 탕자 반갑게 맞아  
목욕시켜 새옷 갈아 입히고  
이웃 불러 잔치하는 소리  
출렁출렁…  
철썩 처르르…  
넘쳐 흐르는 축배, 비말(飛沫)의 장관  
증발 우주선으로 하늘 높이 올려 보내면  
바람 사자가 끄는 구름 수레 타고  
온 하늘 떠다니며 천태 만상 그리다가  
조물주 한마디에 비가 되어 떨어지니니  
이제는 너무 오염되지 말고 돌아왔으면….